

##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77호

나. 발 의 자 : 김지향 의원 외 16명

다. 발의일자 : 2022년 10월 13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, 교육, 훈련, 징계 등 인사전반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사무 위임 규정을 삭제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함(안 별표 5 □ 행정국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)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하고자 발의됨.

##### 나.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입법동향

-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2년 만에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·시행(2022.1.13.)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 임용권한 전반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게 됨<sup>1)</sup>.
- 종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되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(속기·방호·시설관리·운전·관리운영 직렬 등)은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됨.

---

1) 「지방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이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후속 입법조치로 개정됨.

**<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률 주요 개정내용 >**

**「지방자치법」**

- 지방议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규정(제103조제2항)

**「지방공무원법」**

- 지방议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(제6조)
  - ※ 임용권 :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
-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(제7조 등)
- 지방议회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(제30조의2)
  - 행정안전부-지방의회간, 자치단체의 집행기관-지방의회간, 지방의회 상호간 (광역의회-기초의회, 기초의회 상호간) 인사교류 근거 추가
- 지방议회의 신규 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(제32조 등)
  - 시험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집행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

**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**

-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(제3조 등)

**< 시의회사무처 정원 내역 >**

(2022.11월 현재)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		임 기 제							관 리 운 영			전 문 경 령 관	별 정 직	
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1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6급			7급 이하
정원	429	209	6	30	95	78	26	2	158	1	13	21	74	41	7	1	21	2	19	4	9

**다.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(안 별표)**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서울특별시(행정국 인사과)이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▶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·휴직 후 복직·교육 파견·호봉승급과, ▶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삭제함.



- 다만, 법률 개정과 시행 후 상당 기간 경과했음에도 후속 입법 조치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입법공백과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변경사항 등이 신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용우	02-2180-8062